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및 2월 동향

# 리더 메시지

『2월 Newsletter』는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현황 공시 확대’의 규제 동향을 담았습니다.

또한,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이사회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독’과 센터 접수 질의 사안인 ‘주주 충실의무 이행을 위한 주요 거래 시 지배기구 점검 포인트’ 및 이사회·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를 담은 ‘2월 캘린더’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한석 센터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 추진

##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 ▶ 고의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 뿐 아니라 **실질적 지시자**까지 포함
- ▶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위반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 부실감사에 대한 패널티 부과

- ▶ 저가수주(덤핑) 등으로 **감사투입 시간**이 현저히 **적은** 경우를 **우선 점검**
- ▶ 부실감사 확인 시 **감사인 교체, 심사·감리 착수 등** 강력 제재

##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확대

- ▶ 최대주주가 빈번히 변경되거나 임직원 횡령·배임이 발생한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직권지정 감사** 실시

## 감사품질 우수법인 보상체계 강화

- ▶ 감사품질 우수 회계법인이 지정감사 일감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손해배상능력 기준 상향, 군 상향 특례 도입, 품질평가 감점 신설, 군별 상대평가 도입 등

## 대형 회계법인,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 의무화

- ▶ 대형 회계법인에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내부견제기구) 설치·운영 의무화
- ▶ 위원회의 과반을 회계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외부전문가**로 구성

#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CEO 승계절차·이사회 독립성 등  
은행권 지배구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중점 점검 예정

## 실시 배경

- 지배구조 모범관행(4대 테마·30개 핵심원칙)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 이행** 및 운영단계의 **편법적 우회** 문제가 지속 제기
-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춰 사외이사가 주주 이익을 객관적·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건전성 개선** 필요성 대두

## 점검 실시계획안

- 형식적 요소(내규 등)보다 지배구조가 실제로 건전하게 작동하는지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
- 점검결과를 토대로 우수사례·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 은행권과 공유해 **자율적 개선 유도** 예정

##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관련 최근 지적 사례

- 롱리스트 선정 직전, 이사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을 **현 지주 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 결정**
- 내·외부 후보 서류 접수기간을 형식상 15일로 설정했으나 **실제는 5영업일에 불과**
- BSM(이사회 역량 진단표)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 왜곡**
-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지표 없이 **설문방식만** 활용하고, 전원에게 **재선임 기준 등급 이상 부여**

#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현황 공시 확대

2026년부터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란?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대규모 조직

- ① 이익공유 또는 비용분담
- ② 공동의 소유·통제 또는 경영 공유
- ③ 공동의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 공유
- ④ 공동의 사업전략 공유
- ⑤ 공동의 브랜드 명칭 공유
- ⑥ 전문자원 중 상당 부분을 공유

- ↳ '24.12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 개정으로 국제윤리기준과 동일하게 정의 확대
- ↳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독립성 준수 의무 발생

##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공시 대상 범위

- ✓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모든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공시
- ✓ 국내·해외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계약 모두 포함
- ✓ 당해 회사와의 계약만 공시(종속기업은 제외, 회사 지점·사무소는 포함)

## 시행 첫해('26년) 공시 대상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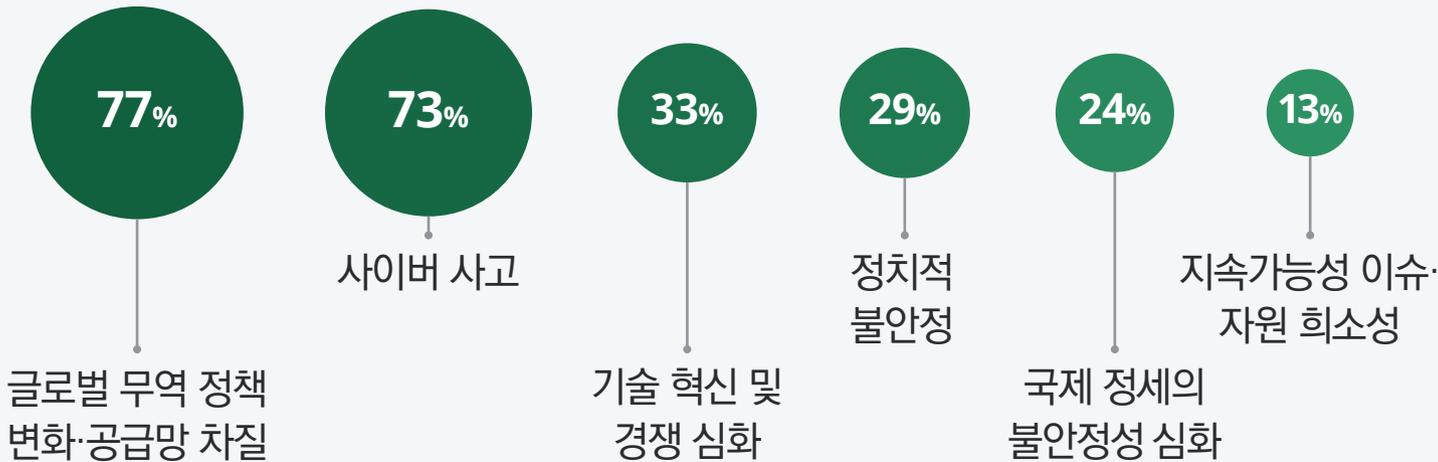
- ✓ 개정 공인회계사윤리기준('25.1.1 시행)에 따른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당기에 수행한 비감사용역 기재
  - 전기 또는 전전기 중 제공이 종료된 용역은 공시 대상 제외
  - 전기 또는 전전기부터 당기까지 수행된 용역은 종전 기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 연도 란에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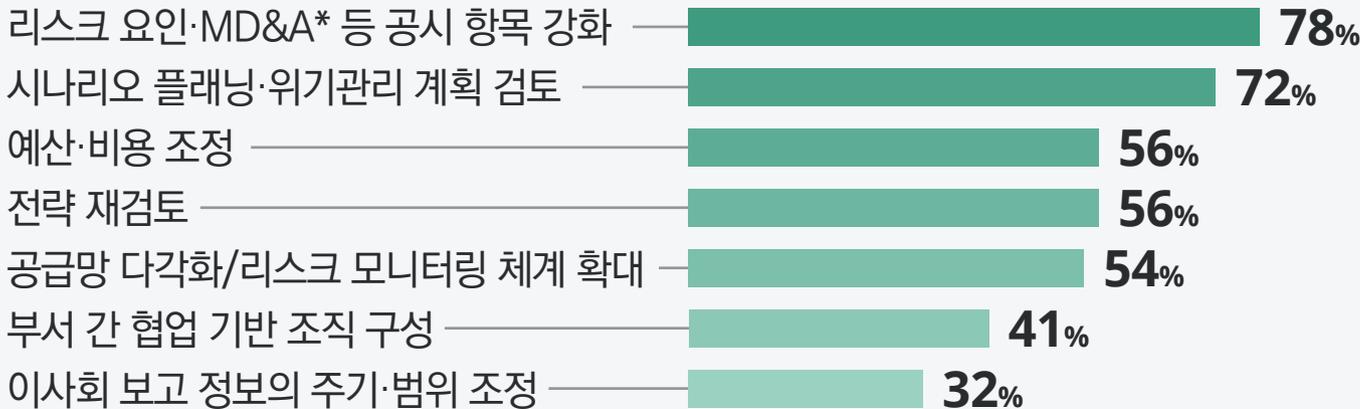
# 이사회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독

글로벌 불확실성 환경에서 이사회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전략적 대응과 기회 포착을 지원해야 함

## 기업들이 인식하는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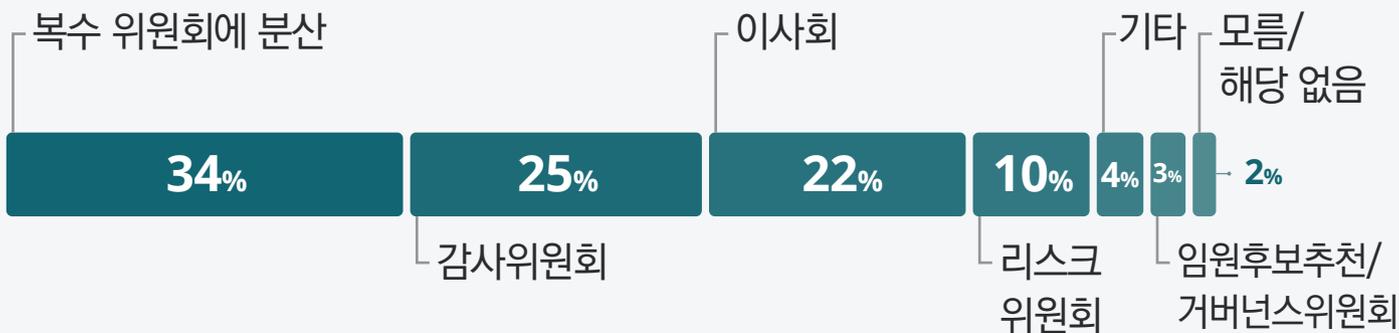


##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관리 전략 (복수 응답)



\*경영진단의견서(Management Discussion and Analysis): 기업 재무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향후 발생가능성 등을 경영진 시각에서 분석하여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문서

## 지정학적 리스크 감독 주체



# 주주 충실의무 이행을 위한 주요 거래 시 지배기구 점검 포인트

**Q.** 총주주 이익 보호 및 주주 간 공평 대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거래와 관련하여, 지배기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주주 충실의무가 확대된 환경에서는, 지배주주-소수주주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주요 거래에 대해 **이사회가 거래 단계별로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실질적 관여·통제**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배기구는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에 부합**하는 절차를 거쳐, **주요 거래의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요 거래 단계별 이사회 관여에 대한 지배기구 점검 포인트

### 거래 추진 단계

거래 초기부터 총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및 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를 이사회가 인지·검토했는가?

### 가치평가 단계

거래가액·비율 산정 근거 및 외부자문의견에 대한 이사회가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거래 당사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복수 조건 비교가 가능했고, 사외이사의 의견 개진 기회가 보장되었는가?

### 거래 이행 단계

계약 체결 이후 인허가, 선행조건, 대금 조정 등 주요 이슈가 이사회에 적시 보고되었는가?

\*다만, 거래조건과 규모에 중대한 변동이 없는 통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경우 단계별 보고가 필수는 아님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이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지침-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이행과 관련하여-」(2026.01.)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됨

☐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

'회계투명성'과 '지배구조 선진화' 등 학문적 기여로 회계학 발전 이끌어

## Honors Award - 공로상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탁월한 연구업적을 보유하고, 향후 해당 분야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진학자



## Emerging Scholar Award - 신진학자상



**이한솔**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최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향후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진학자



“

우수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취를 격려하고  
국내 회계학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 02 | FEBRUAR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02 음 12.15	03	04 입춘	05	06	07
08	09	10	11	12	13 <small>외부감사인 선임기한(권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금융사 제외 (법정기한: 2/19(목))</small>	14
15	16 설날 연휴	17 설날 음 1.1	18 설날 연휴	19 우수	20	21
22	23	24	25	26	27	28

## 이사회

- ✔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사항(주요 의안) 의결
  - 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등 재무제표 의결
  - ②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에 따른 경영 참고 사항
  - ③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의안에 대한 활동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④ 이사의 선임 의안-이사후보자 성명·약력·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
  - ⑤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역 중 대통령령에 따른 사항
  - ⑥ 정관 변경 등 회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타 의안
- ☑ 회사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 감사/감사위원회

- ✔ 금융사 및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이사에 제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등 수령시점으로부터 4주 내)
- ✔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수령 (1-2월 중, 정기 주총 개최 6주전)
- ✔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종료 보고 수령(1-3월 중)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에 보고
- ✔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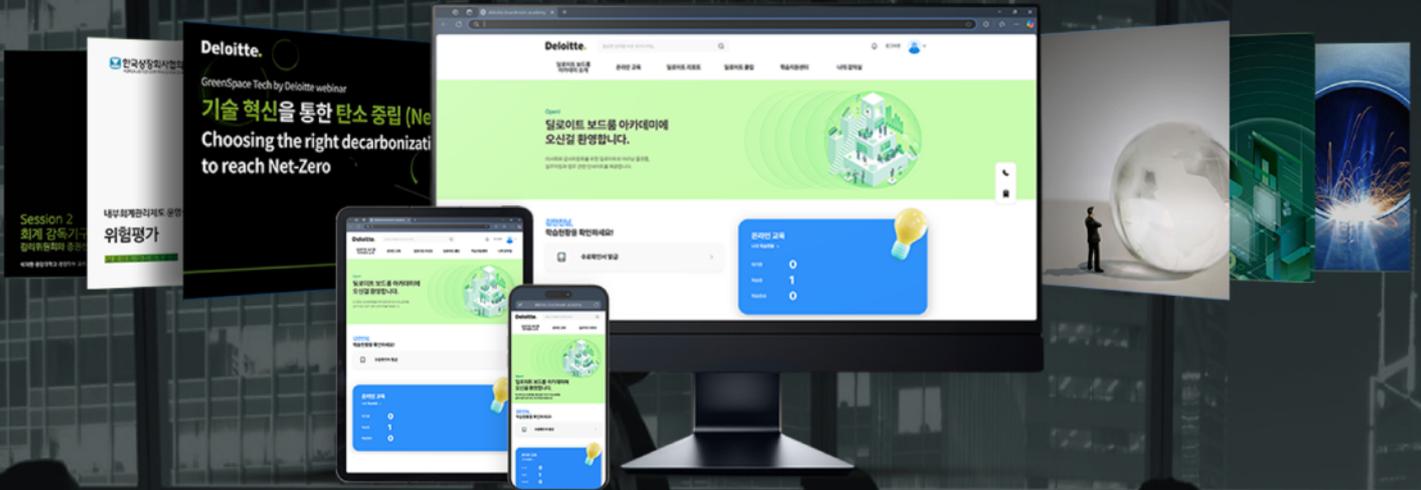
\* 이사회·감사위원회 캘린더 안내 및 전체사항(중요): 본 캘린더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서 범용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수행되는 월별 필수업무 및 권고사항을 참고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업별 자산규모, 사업특성 및 내부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운영 계획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연간 일정 수립 시에는 관련 전문가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사화·감사위원회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이용 대상 전면 확대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



사외이사님, 감사위원님, 감사님을 비롯해  
기업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딜로이트와 외부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담은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의 문을 넓혔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사화·감사위원회 핵심 이슈 중심 맞춤형 아젠다 제공  
(기업 지배구조, 재무보고, 자금사고 방지, SI 등)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클립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PC와 모바일을 통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학습



공시용 수료확인서 발급 가능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hansukim@deloitte.com



##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정현 파트너

회계감사

@ hyunjeong@deloitte.com



## 박종성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김학범 파트너

통합 재무 서비스 그룹

@ hbkim@deloitte.com



## 임정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정훈 파트너

회계감사

@ junoh@deloitte.com



## 유민지 파트너

회계감사

@ minjyoo@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Deloitt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파트너

[hansukim@deloitte.com](mailto:hansukim@deloitte.com)

강환우 상무보

[hwankang@deloitte.com](mailto:hwankang@deloitte.com)

이주연 차장

[juyeonlee@deloitte.com](mailto:juyeonlee@deloitte.com)

이화연 과장

[hwaylee@deloitte.com](mailto:hwaylee@deloitte.com)

권예은 대리

[yeekwon@deloitte.com](mailto:yeekwon@deloitte.com)

Contact us

[krccg@deloitte.com](mailto: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